|  |  |  |
| --- | --- | --- |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수입세 정책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6]71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列市) 재정청(국)•교육청(국)•발전개혁위•과기청(위•국)•공업및정보화주관부서•민정청(국)•상무청(국)•국가세무국, 해관총서 광둥(廣東)지서와 각 직속세관,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무국•과기국•민정국•상무국 :  재정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은 당중앙 및 국무원의 혁신발전전략 관련 취지를 심도있게 관철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전면 혁신에 대한 견인 기능을 발휘시키고자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13.5' 기간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수입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관세[2016]70호)를 연합발표하였다. 정책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수입세 정책 관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국무원 각 부서•위원회와 직속기구 산하의 과학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각 유형의 과학연구원(소)는 과기부가 명단을 확정하여 해관총서에 공문으로 고지하고 이 통지 제8조의 출판물 수입업체에 통보한다. 해당 유형의 과학연구원(소)는 주관부서로부터 발급받은 설립승인서류, <사업조직법인증서>를 지참하여 세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감면 수속을 이행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列市) 산하의 과학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각 유형의 과학연구원(소)는 본급 과기주관부서가 명단을 확정하여 관련 과학연구원(소) 소재지 직속세관에 공문으로 고지하고 이 통지 제8조의 출판물 수입업체에 통보한다. 해당 유형의 과학연구원(소)는 주관부서로부터 발급받은 설립승인서류, <사업조직법인증서>를 지참하여 세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감면 수속을 이행한다.  2. 국가에서 학력을 인정하는 전문학과 및 그 이상의 고등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교육기관은 교육부가 확정하여 교육부서 웹사이트에 공표하며 세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감면 수속을 이행한다.  3.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재정부•해관총서 및 국가세무총국과 회동하여 확정한 국가공학연구센터의 면세수입 자격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 국가공학연구센터관리방법에 따라 확정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재정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 및 과기부와 회동하여 확정한 기업기술센터의 경우 <국가기업기술센터 인정 관리방법>(국가발전개혁위•과기부•재정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령 제34호)에 따라 면세 자격을 확정하며 세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감면 수속을 이행한다.  4. 과기부가 재정부•해관총서 및 국가세무총국과 회동하여 확정한 과확기술체제개혁에 따라 기업으로 조직형태를 전환하였거나 기업 내부조직으로 합병되어 주로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국가중점실험실, 기업국가중점실험실, 국가공학기술연구센터의 면세수입 관리방법은 과기부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5. 과기부가 민정부와 회동하여 확정하였거나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列市)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의 과기주관부서가 동급 민정부서와 회동하여 확정한 과학기술류 민영 비기업체 조직의 면세수입 관리방법은 첨부 1에 따른다.  6. 공업및정보화부가 재정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과 회동하여 확정한 국가중소기업공공서비스시범플랫폼(기술류)의 면세수입 관리방법은 첨부 2에 따른다.  7.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列市)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의 상무주관부서가 동급 재정부서•국세부서 및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 소재지 직속세관과 회동하여 확정한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의 면세수입 관리방법은 첨부 3에 따른다.  8.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승인한 출판물 수입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출판물 수입업체 : 중국도서수출입(집단)총공사 및 그 산하의 독립법인 자격을 보유한 자회사, 중국경제도서수출입공사, 중국교육도서수출입유한공사, 베이징중커(中科)수출입유한책임공사, 중국과기자료수출입총공사, 중국국제도서무역집단유한공사는 세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감면 수속을 이행한다. 면세수입상품 판매대상 중의 과학연구원(소)라 함은 이 통지 제1조에서 언급한 확정 절차를 거친 과학연구원(소)를 지칭하며; 학교라 함은 이 통지 제2조에서 언급한 확정 절차를 거친 고등교육기관을 지칭한다.  출판물 수입업체는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직전연도의 면세수입 도서•자료 등 상황을 재정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제출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비안(備案)정보에는 상품 종류, 수입액, 면세수입상품 구입처•사용업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연구원(소)•학교가 출판물 수입업체로서 수입하는 과학연구•교학용 도서•자료 등의 면세 범위는 수입과학연구•과학기술연구개발•교학용품 면세품목 리스트의 '5. 도서, 문헌, 신문•정기간행물 및 기타 자료(읽기 전용 광디스크, 마이크로피시(microfiche), 필름, 지구자료 위성사진, 과학기술 및 교학용 음성물•영상물 )'에 따라 집행한다.  9. 재정부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확정한 기타 과학연구기구, 기술개발기구, 학교에 대하여서는 상기 관련 조항을 참조하여 면세수입 관리를 실시한다.  10. 재정부 등 관련 부서와 그 업무인력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면세정책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범하는 등 위법•범칙행위를 행하는 경우 <예산법>, <공무원법>, <행정감찰법>, <재정위법행위 처벌•처분조례> 등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에 연루된 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이 통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첨부 1 : 과학기술류 민영 비기업체 조직이 면세수입하는 과학연구•과학기술개발•교학용품 관리방법  첨부 2 : 국가중소기업공공서비스시범플랫폼(기술류)이 면세수입하는 과학연구•과학기술개발•교학용품 관리방법  첨부 3 :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가 면세수입하는 과학연구•과학기술개발•교학용품 관리방법  재정부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  과기부  공업및정보화부  민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2017년 1월 14일  첨부 3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가 면세수입하는 과학연구•과학기술개발•교학용품 관리방법  제1조 이 방법에서 언급되는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는 그 설립시기별로 각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2009년 9월 30일 및 그 이전에 설립된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① 연구개발비 기준 : (i)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가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그 투자총액이 미화 500만불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내부에 설치된 부서 또는 지사 등 비독립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그 연구개발 총투입이 미화 500만불 이상이어야 한다. (ii)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경비 지출액이 1,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② 연구 및 실험개발 전문인력이 9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설립된 이래 구매한 설비의 취득원가 누계액이 1,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2009년 10월 1일 및 그 이후에 설립된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① 연구개발비 기준 :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그 투자총액이 미화 800만불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내부에 설치된 부서 또는 지사 등 비독립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그 연구개발 총투입이 미화 800만불 이상이어야 한다.  ② 연구 및 실험개발 전문인력이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설립된 이래 구매한 설비의 취득원가 누계액이 2,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그 중에서,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i) '투자총액'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준증서 또는 설립•변경비안(備案)증명서상에 기재된 금액을 지칭한다.  (ii) '연구개발 총투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연구개발센터를 설립 및 구축하기 위하여 투입한 자산을 지칭하며 구매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투입을 앞두고 있는 자산도 포함된다(이미 구매한 자산 리스트와 곧 구매하게 될 자산의 계약서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함).  (iii) '연간 연구개발경비 지출액'이라 함은, 직전 2개 회계연도의 연평균 연구개발경비 지출액을 지칭하며; 2개의 온전한 회계연도를 채우지 못한 경우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가 설립된 후 임의의 연속된 12개월의 실제 연구개발경비 지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현금과 현물자산의 투입이 60%이상이어야 한다.  (iv) '연구 및 실험개발 전문인력'이라 함은, 기업의 과학기술 활동 담당인력 중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실험개발 세가지 유형의 프로젝트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인력을 지칭하며 직접적으로 상기 세가지 유형의 프로젝트 활동에 종사하는 인력과 관련 과학기술 관리 전문인력 및 프로젝트를 위하여 자료•문헌, 재료, 설비를 제공하는 직접적 서비스 인력을 포함한다. 상기 인력은 반드시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 또는 그가 소속되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계약기간 1년 이상의 노동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하며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의 신청 제출 직전일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v) '설비'라 함은, 과학연구•교학 및 과학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실험설비•장치 및 기기를 지칭한다. 구매한 설비의 취득원가 누계액 계산 시 수입설비와 국산설비의 취득원가를 모두 산입하여야 하며 구매계약을 이미 체결한 당해 연도 내에 납품될 예정인 설비(구매계약서 리스트 및 납품기한을 제출하여야 함)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 방법을 적용받는 상기 수입설비의 범위는 수입과학연구•과학기술연구개발•교학용품 면세품목 리스트에 열거된 상품으로 한다.  제2조 자격조건 심사  (1)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列市)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의 상무주관부서는 동급 재정부서•국세부서 및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 소재지 직속세관(이하 '심사부서'로 약칭)과 회동하여 현지의 현황을 바탕으로 심사절차와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한다. 연구개발센터는 이 방법의 관련 요구에 따라 그 소재지의 상무주관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상무주관부서의 주도하에 심사부서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가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 방법 제1조에 열거된 조건 및 요구에 따라 면세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연구개발센터 명단을 확정한다.  (3) 심사를 거쳐 면세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의 경우 심사부서가 공고의 형식으로 연합공표하고 그 명단을 상무부(외자사), 재정부(관세사), 해관총서(관세징수관리사), 국가세무총국(화물및용역세사)에 통보하여 비안(備案)한다.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의 경우 상무주관부서가 연석회의의 결정에 근거하여 서면심사의견을 발행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상기 공고 또는 심사의견 발행은 심사부서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근무일 기준) 내에 이뤄져야 한다.  면세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는 공고 공표일로부터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수입세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입과학연구•과학기술연구개발•교학용품 면세품목 리스트에 따라 수입할 수 있다. 2015년 12월 31일(포함) 이전에 이미 면세 자격을 취득하였고 면세 자격 취득시점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격 재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따라 이미 재심사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가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면세 혜택을 누린지 2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 2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4) 심사부서는 2년을 주기로 면세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를 대상으로 자격 재심사를 실시한다.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연구개발센터는 그 명단을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 소재지 직속세관에 공문으로 고지하고 해관총서(관세징수관리사)에 통보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하며 재심사에서 탈락된 연구개발센터가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수입세 정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취소되는 일자를 공문상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수입설비 면세 자격을 신청하는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 수입설비 면세 자격 신청서 및 심사표;  (2)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 또는 설립•변경비안(備案)증명서 및 영업집조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비독립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의 경우 그가 소속되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 또는 설립•변경비안(備案)증명서 및 영업집조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본검사보고서 및 직전연도의 회계감사보고서 복사본;  (4) 연구개발비 지출 명세서, 설비구매 지출 명세서와 리스트 및 통지의 규정에 따라 응당히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5) 연구 및 실험개발 전문인력 명단(성명, 직위, 노동계약 기간, 연락방식 포함);  (6) 심사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4조 관련 업무 관리  (1) 공고상의 명단에 포함된 면세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세금감면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2) 심사부서는 공동으로 연구개발센터의 자격을 심사 및 인정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자료 열람, 상황 조사를 통해 그가 제출한 신청서류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센터에 대한 정책 지도와 서비스 강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업무 효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3)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 구매설비 세금면제•환급 자격 심사표>상의 관련 정보를 지체없이 외국인투자종합관리정보시스템에 기입하여야 한다.  별표 :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 구매설비 세금면제•환급 자격 심사표 (생략) |  | **关于支持科技创新进口税收政策管理**  **办法的通知**  财关税[2016]71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教育厅（局）、发展改革委、科技厅（委、局）、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民政厅（局）、商务厅（局）、国家税务局，海关总署广东分署、各直属海关，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科技局、民政局、商务局：  　　为深入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关于创新驱动发展战略有关精神，发挥科技创新在全面创新中的引领作用，经国务院批准，财政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联合印发了《关于“十三五”期间支持科技创新进口税收政策的通知》（财关税〔2016〕70号）。为加强政策管理，现将支持科技创新进口税收政策管理办法通知如下：  　　一、国务院部委、直属机构所属从事科学研究工作的各类科研院所，由科技部核定名单，函告海关总署，并抄送本通知第八条出版物进口单位。此类科研院所持凭主管部门批准成立的文件、《事业单位法人证书》，按海关规定办理有关减免税手续。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所属从事科学研究工作的各类科研院所，由本级科技主管部门核定名单，函告相关科研院所所在地直属海关，并抄送本通知第八条出版物进口单位。此类科研院所持凭主管部门批准成立的文件、《事业单位法人证书》，按海关规定办理有关减免税手续。  　　二、国家承认学历的实施专科及以上高等学历教育的高等学校，由教育部核定并在教育部门户网站公布，按海关规定办理有关减免税手续。  　　三、国家发展改革委会同财政部、海关总署和国家税务总局核定的国家工程研究中心的免税进口资格，按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会同有关部门另行制定的国家工程研究中心管理办法确定。  　　国家发展改革委会同财政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和科技部核定的企业技术中心，按《国家企业技术中心认定管理办法》（国家发展改革委 科技部 财政部 海关总署 国家税务总局令第34号）确定免税资格，按海关规定办理有关减免税手续。  　　四、科技部会同财政部、海关总署和国家税务总局核定的科技体制改革过程中转制为企业和进入企业的主要从事科学研究和技术开发工作的机构、国家重点实验室、企业国家重点实验室、国家工程技术研究中心的免税进口管理办法由科技部会同有关部门另行制定。  　　五、科技部会同民政部核定或者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科技主管部门会同同级民政部门核定的科技类民办非企业单位的免税进口管理办法见附件1。  　　六、工业和信息化部会同财政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核定的国家中小企业公共服务示范平台（技术类）的免税进口管理办法见附件2。  　　七、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商务主管部门会同同级财政、国税部门和外资研发中心所在地直属海关核定的外资研发中心的免税进口管理办法见附件3。  　　八、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批准的下列具有出版物进口许可的出版物进口单位：中国图书进出口（集团）总公司及其具有独立法人资格的子公司、中国经济图书进出口公司、中国教育图书进出口有限公司、北京中科进出口有限责任公司、中国科技资料进出口总公司、中国国际图书贸易集团有限公司，按海关规定办理有关减免税手续。免税进口商品销售对象中的科研院所是指本通知第一条中经核定的科研院所；学校是指本通知第二条中经核定的高等学校。  　　出版物进口单位应在每年3月31日前将上一年度免税进口图书、资料等情况报财政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备案。备案信息应包括商品种类、进口额、免税进口商品的销售流向、使用单位等。  　　对出版物进口单位为科研院所、学校进口用于科研、教学的图书、资料等的免税范围，按进口科学研究、科技开发和教学用品免税清单中的“五、图书、文献、报刊及其他资料（包括只读光盘、微缩平片、胶卷、地球资料卫星照片、科技和教学声像制品）”执行。  　　九、财政部会同有关部门核定的其他科学研究机构、技术开发机构、学校，比照上述有关条款进行免税进口管理。  　　十、财政部等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在政策执行过程中，存在违反执行免税政策规定的行为，以及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等违法违纪行为的，按照《预算法》、《公务员法》、《行政监察法》、《财政违法行为处罚处分条例》等国家有关规定追究相应责任；涉嫌犯罪的，移送司法机关处理。  　　本通知自2016年1月1日起实施。  　　附件: 1. 科技类民办非企业单位免税进口科学研究、科技开发和教学用品管理办法  　　 2. 国家中小企业公共服务示范平台（技术类）免税进口科学研究、科技开发和教学用品管理办法  　　 3. 外资研发中心免税进口科学研究、科技开发和教学用品管理办法  财政部  教育部  国家发展改革委  科技部  工业和信息化部  民政部  商务部  海关总署  国家税务总局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2017年1月14日  附件3  外资研发中心免税进口科学研究、科技  开发和教学用品管理办法  第一条 本管理办法所指外资研发中心，根据其设立时间，应分别满足下列条件：  （一）对2009年9月30日及其之前设立的外资研发中心，应同时满足下列条件：  1.研发费用标准：（1）对外资研发中心，作为独立法人的，其投资总额不低于500万美元；作为公司内设部门或分公司的非独立法人的，其研发总投入不低于500万美元；（2）企业研发经费年支出额不低于1000万元。  2.专职研究与试验发展人员不低于90人。  3.设立以来累计购置的设备原值不低于1000万元。  （二）对2009年10月1日及其之后设立的外资研发中心，应同时满足下列条件：  1.研发费用标准：作为独立法人的，其投资总额不低于800万美元；作为公司内设部门或分公司的非独立法人的，其研发总投入不低于800万美元。  2.专职研究与试验发展人员不低于150人。  3.设立以来累计购置的设备原值不低于2000万元。  其中，有关定义如下：  　　（1）“投资总额”，是指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或设立、变更备案回执所载明的金额。  　　（2）“研发总投入”，是指外商投资企业专门为设立和建设本研发中心而投入的资产，包括即将投入并签订购置合同的资产（应提交已采购资产清单和即将采购资产的合同清单）。  　　（3）“研发经费年支出额”，是指近两个会计年度研发经费年均支出额；不足两个完整会计年度的，可按外资研发中心设立以来任意连续12个月的实际研发经费支出额计算；现金与实物资产投入应不低于60%。  　　（4）“专职研究与试验发展人员”，是指企业科技活动人员中专职从事基础研究、应用研究和试验发展三类项目活动的人员，包括直接参加上述三类项目活动的人员以及相关专职科技管理人员和为项目提供资料文献、材料供应、设备的直接服务人员，上述人员须与外资研发中心或其所在外商投资企业签订1年以上劳动合同，以外资研发中心提交申请的前一日人数为准。  　　（5）“设备”，是指为科学研究、教学和科技开发提供必要条件的实验设备、装置和器械。在计算累计购置的设备原值时，应将进口设备和采购国产设备的原值一并计入，包括已签订购置合同并于当年内交货的设备（应提交购置合同清单及交货期限），适用本办法的上述进口设备范围为进口科学研究、科技开发和教学用品免税清单所列商品。  第二条 资格条件审核  　　（一）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商务主管部门会同同级财政、国税部门和外资研发中心所在地直属海关（以下简称审核部门），根据本地情况，制定审核流程和具体办法。研发中心应按本办法有关要求向其所在地商务主管部门提交申请材料。  　　（二）商务主管部门牵头召开审核部门联席会议，对外资研发中心上报的申请材料进行审核，按照本办法第一条所列条件和要求，确定符合免税资格条件的研发中心名单。  　　（三）经审核，对符合免税资格条件的外资研发中心，由审核部门以公告形式联合发布，并将名单抄送商务部（外资司）、财政部（关税司）、海关总署（关税征管司）、国家税务总局（货物和劳务税司）备案。对不符合有关规定的，由商务主管部门根据联席会议的决定出具书面审核意见，并说明理由。上述公告或审核意见应在审核部门受理申请之日起45个工作日之内做出。  符合免税资格条件的外资研发中心，自公告发布之日起，可按规定享受支持科技创新进口税收政策，按照进口科学研究、科技开发和教学用品免税清单免税进口。在2015年12月31日（含）以前，已取得免税资格未满2年暂不需要进行资格复审的、按规定已复审合格的外资研发中心，在2015年12月31日享受免税未满2年的，可继续享受至2年期满。  　　（四）审核部门每两年对已获得免税资格的外资研发中心进行资格复审。对于复审不合格的研发中心，名单函告外资研发中心所在地直属海关，抄送海关总署（关税征管司）备案，并在函中明确取消复审不合格的研发中心享受支持科技创新进口税收政策资格的日期。  　　第三条 外资研发中心申请进口设备免税资格，应提交以下材料：  （一）外资研发中心进口设备免税资格申请书和审核表；  （二）外资研发中心为独立法人的，应提交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或设立、变更备案回执及营业执照复印件；研发中心为非独立法人的，应提交其所在外商投资企业的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或设立、变更备案回执及营业执照复印件；  　　（三）验资报告及上一年度审计报告复印件；  　　（四）研发费用支出明细、设备购置支出明细和清单以及通知规定应提交的材料；  　　（五）专职研究与试验发展人员名册（包括姓名、工作岗位、劳动合同期限、联系方式）；  （六）审核部门要求提交的其他材料。  　 第四条 相关工作管理  （一）列入公告名单的符合免税资格条件的外资研发中心，可按有关规定向海关申请办理减免税手续。  （二）审核部门在共同审核认定研发中心资格的过程中，可到研发中心查阅有关资料，了解情况，核实其报送的申请材料的真实性。同时应注意加强对研发中心的政策指导和服务，提高工作效率。  　　（三）省级商务主管部门应将《外资研发中心采购设备免、退税资格审核表》有关信息及时录入外商投资综合管理信息系统。  附表：外资研发中心采购设备免、退税资格审核表（略） |